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홍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819

발의연월일: 2022. 8. 10.

발 의 자:김홍걸·강민정·김경만

김승남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송기헌 · 윤미향 · 조은희

조정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 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청소년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 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제3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	제13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
선 제공) 국가 또는 지방자치	선 제공)
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	
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	
한다. 다만, 예산부족이나 아이	
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	
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2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	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
	모의 자녀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